



문서번호 : 22-04-개혁입법-01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위원장 김남근)

제 목 : [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전송일자 : 2022. 4. 10.(일)

전송매수 : 총 2매

[취재요청]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 회견 안내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5년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5대 영역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전>의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분야에 ‘국민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의 신장’,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개혁’ 등 4개의 장을, <노동존중과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분야에 ‘노동기본권의 실현과 고용안정’, ‘독과점과 불공정으로부터 중소기업인 보호’, ‘가계의 주거와 채무의 안정’, ‘문화예술분야’ 등 4개의 장을, <보편적 인권과 복지확대> 분야에 ‘보편적 인권의 실현’,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소수자 인권의 보호’, ‘아동과 청소년 인권의 보호’ 등 4개의 장을 하위의 장을 각 구성하여, 총 5대 분야 14개 장 74대 개혁국정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3. 선정된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차기정부에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해당 개혁과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내용들이 상당수 인 바, 차기정부에서도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및 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2022. 4. 11.(월) 13:3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 앞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행사개요】

○ 제목 : 민변이 바라 본 차기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국정과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달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4월 11일(월) 13:30 - 14:00

○ 장소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

○ 프로그램

-사회 : 이주한 변호사

-윤석열 정부 5년 개혁과제 제안내용

-사법 분야 (장유식 변호사)

-노동 분야 (이종훈 변호사)

-민생 분야 (김종보 변호사)

-정치 분야 (김준우 변호사)

-정보인권 분야 (김하나 변호사)

2022년 4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별지]

1. 취지와 목적

- 시민의 인권보호와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평등, 공정의 이념을 실현할 제도개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온 민변은 차기정부 5년 동안에도 이러한 권력의 민주적 통제, 민주주의 진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를 진척시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임.
- 차기정부가 이러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과정에서 개혁이 크게 후퇴할 것 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된 것도 사실임. 민변은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적 지지를 받으며 이어져 온 개혁과제들은 차기정부에서도 계속 진척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그동안의 개혁입법 활동을 해 오던 경험이 정리하여 차기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전달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촉구함.

2. 발언내용

- 김남근 변호사
- 장유식 변호사
 - 사법분야와 관련하여,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긴장감이 높은 영역 중 하나가 사법분야(검찰, 공수처, 경찰, 국정원과 법원 등)라고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 특히 검찰 관련 공약이 기존의 개혁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함. 민변이 사법분야에서 제시해왔던 개혁과제 역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사법’이라는 관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음. 차기정부가 선거 시기 내세웠던 공약을 고집하지 말고, 민변이 오랫동안 고민해오고 실천해왔던 개혁과제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림. 먼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견제와 협력을 통한 공정한 수사절차 실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함. 현 정부가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함. 검찰은 수사권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소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공수처는 도입취지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함. 경찰의 수사역량이 강화되어야만 수사권과 기소권이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함.
 - 경찰권과 관련하여서도,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의 확대 등이 필요함.
 - 국정원은 현정부의 개혁을 통해 국내정치정보의 수집이 전면 금지되었고, 대공수사권의 경찰이관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국정원의 권한범위는 애매모호하고, 민주적 통제는 미흡함. 정보(보안)보호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범위를 명백히 하고, 정보감찰관 등 외부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국정원의 중심적 역할을 전제로 한 테러방지법이 건재하다는 점, 사이버안보법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반개혁적인 시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법원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제안함. 합의제 사법행정기구(가칭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법관임용제도의 개혁,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번호사제도 재도입,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노동법원 설립, 국민소송법 제정 등 ‘국민을 위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가 있음.

- 이종훈 변호사
 - 노동분야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에게 노동이 존중받는 한국사회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함.
 - ‘첫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관철해야 합니다. 일곱째, 노동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로 인해 일터에서 노동자가 더 이상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덟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홉째, 노동법원을 설립해야 합니다.’
- 김종보 변호사
 - 민생경제분야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을 촉구함.
 - 코로나 사태로 인해 PC방, 당구장, 노래방, 음식점 등 수많은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 또한 상가임대료의 감액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종의 권고안을 만들어 신속하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함.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회사 입찰 담합, 군납비리 등 위법한 재정지출이 발생하여도 납세자인 국민은 이를 견제할 방법이 없음. 이에 국민적 차원에서 정부의 위법한 재정지출을 견제·감시할 수 있는 사법제도가 필요함.
 - 집단소송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가슴기살균제 사건(소비재), BMW 차량화재(자동차), 훔플러스 고객정보 불법판매(개인정보),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여 왔음. 그러나 집단소송을 제기하기에 그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증거수집도 어려우며, 손해배상도 충분치 않아 기업들에게 경고의 의미가 없음. 이에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부에게 미치도록 하는 옵트 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도,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촉구함.
 -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를 촉구함.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플랫폼은 공급업자들에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수수료와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음.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다수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임.
 - 가맹점주나 대리점주의 실질적 교섭력 보장,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협의권 실효성 보장 등, 중소기업의 합리적 공동행위 보장 방안을 촉구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게 절대적인 을의 위치에 있음. 중소기업들을 출혈 경쟁을 내모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뒷받침 해주어야 함.
 -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심각함이 더 가중되고 있음. 개인도산법제를 개선하여 한계채무자에 대한 공적채무조정을 활성화해야 함. 그리고 회생채무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채권추심이 우려됨.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확대하여 채무자에게 연락을 못하게 되는 채권자의 범위를 제1금융기관까지 모든 채권자로 확대해야 함. 초저금리 상황에서 최고이자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해야 함.
 - 부동산 문제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함. 그 중 중요한 것은, 1) 공시가격 현실화를 앞당겨야 함. 2) 보유세 실효세율이 1% 수준에 이르도록 강화해야 함. 3)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함. 4)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임대 등록을 의무화해야 함.

- 서민의 주거권을 위해서, 1) 매년 20만호씩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2) 환매조건부 주택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법 개선, 3) 주거급여 확대 및 최저 주거기준 개선, 4) 주택임차인이 최소 6년은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횟수 증가 등의 조치가 필요함.
- 김준우 변호사
 - 정치분야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했으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하향(18세), 정당가입연령 하향(조건부 16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장애인·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탁금 하향,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지방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 감축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큰 공약이었던 개헌은 무산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희극적 결말이 이뤄졌음을 지적함.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다양한 정치개혁 과제들도 대부분 미완으로 남겨져 있으므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들은 산적해있고 그 몫은 새로운 정부와 21대 국회의 몫으로 남게 되었음.
 -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다한 과제가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선거제도 개혁임. 선거제도의 비례성 개선을 위한 추가입법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모두 이뤄져야 함. 다당제가 선이라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시민과 주민의 얼굴을 닮은 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것임. 윤석열 당선자는 중대선거구 확대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다당제가 자신의 소신이라고 밝혔음. 구체적인 정책대안은 다양할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비례성을 개선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되었든,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되었든, 정당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할 수 있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선거제도로 개혁되어야 할 것임.
 - 대선과 단체장 선거에서도 결선투표제도입이 필요함. 투표권자의 50% 지지도 못 얻는 당선자, 투표 진행 중에 후보가 사퇴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될 이유가 없음.
 -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참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는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배제되어있음. 또한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전투표로도 투표하기 힘든 노동자들이 많으므로, 투표시간 연장을 통해서 ‘투표할 권리’가 차별없이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함.
 -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되어야 함. 교사와 공무원의 경우 투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된 상황임. OECD 가입 국가들과 비교해도 정당가입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아 왔고, ILO에서도 누차 이 문제는 지적되어왔음. 공무원과 교사에게도 정당가입과 정당 후원회 가입과 후원금 기부, 피선거권과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임. 정치개혁의 사안은 대부분 입법사안이지만, 청와대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정부가 정치개혁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길 바람.
- 김하나 변호사는
 -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8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를 포함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정보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인권 정책 질의서를 보냈지만, 당시 윤석열 후보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는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정보인권 관련 내용을 훑어보면, AI 교육혁명, AI 디지털 플랫폼 정부실현, AI 디지털범죄피해구제 사법체계 구축과 같이 ‘AI 기술개발과 활용’에 치중하고 있고,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온 정보인권 이슈에 대한 정책 기초를 확인할 수 있는 공약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 정보인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제 구축인데, 사회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에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규제할 최소한의 법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기술개발은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위험성에 따라 다르게 관리·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술 개발과 발전의 측면에서도 현재의 ‘개발 일변도’의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법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 현행 정보인권 관련 법률 개정도 아주 중요한 개혁과제인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가 제한적이며,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배제를 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를 국제인권 수준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 한편, 현행법상 수사정보기관은 사실상 아무런 사전적·사후적 제한 없이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수집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패킷감청,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제한 조치 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전면개정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함.
-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제도 개선이 필요성도 매우 큰데, 스마트폰과 PC 등 전자기기에는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자정보 수집은 선별압수가 원칙이나 현실은 저장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압수하는 형국이므로 제도적으로 디지털증거 압수과정에서 절차적·기술적인 내용을 피압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고지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실제 선별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이 사무실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만 검색하여 압수하도록 하는 수색영장 집행을 의무화하여야 함. 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해당 매체에 제3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보주체의 참여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형사소송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피압수자의 정보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끝